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7.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5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7. 5.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19.7.18.)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신동명)

가. 제안이유

- 전문지식이 풍부한 도시계획 및 재건축 관련 부서로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구분	현행	개 정 (안)
뉴디자인국	시장정비사업	[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도시환경국	-	[신설] 시장정비사업(재건축)에 관한 사항

- 시장정비(재건축) 업무 이관 범위

-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만 지역경제과 추진

- 시장정비사업 주관부서 조정 : 지역경제과 ⇒ 재건축사업과범위

- ▶ 공동주택과 연계된 시장정비사업이 많고, 단독건물의 경우에도 주상복합형 건물로 재건축되므로 재건축사업과로 이관(단, 시장현대화사업은 이관 제외)

○ 소관 국·과장 변경 및 분장사항 일괄정비 및 업무분장에 따른 부칙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 입법예고(2019. 5. 31. ~ 6. 20.) : 의견 1건

- ▶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계획에 따른 부서별 업무 신설
관련 의견 : 일부반영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현재 뉴디자인국(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실무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장정비사업은 기존의 건물형 시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실질적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존의 업무 노하우가 있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한편, 우리구의 시장정비사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진행 현황

시 장 명	소 재 지	등록	점포수	진행상황	비 고
논현종합시장	봉은사로33길33(논현동)	1979년	92	사업시행인가 신청(18.12.3)	사업시행 보완 중
남서울종합시장	남부순환로 2921(대치동)	1981년	216	정비사업 승인추천(18.3.21)	추진계획 보완 중
강남시장	압구정로2길46(신사동)	1974년	100	추진위원회 구성(18.9.7.)	
청담삼익시장	학동로101길26(청담동)	1980년	172	정비사업 법인 설립(16.6.2.)	

○ 시장정비사업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 내 고층 복합건물 형태로 개발되어 돌출경관, 일조권 침해, 교통량 증가,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으로 지역민원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있는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업무 담당부서 조정(지역경제과 등 →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부서)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파트지구 내 시장 및 아파트와 동일 건물 내 시장 등 공동주택과 연계된 시장정비사업이 많고, 단독건물의 경우에도 주상복합형 건물로 재건축되므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관하는 추세에 있음.

<자치구별 시장정비사업 추진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추진단계			비고
		사업계획승인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	완료단계 (준공)	
1	중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2	광진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3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4	성북구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5	강북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6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도시재정비과	도시재정비과	
7	마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8	성동구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9	강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10	강서구	주택과	주택과	주택과	
11	양천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12	관악구	주택과	주택과	주택과	
13	서초구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14	구로구	지역경제과	주택과	주택과	
15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주택과	주택과	

16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17	송파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8	강남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9	용산구	사례없음			
20	금천구	사례없음			
21	중랑구	사례없음			
22	동작구	사례없음			
23	종로구	사례없음			
24	노원구	사례없음(건물형 시장 없음)			
25	도봉구	사례없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뉴디자인국에 두는 과)제2항제3호 중 “시장정비사업 및 대규모점포 관리” 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관리” 로 개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뉴디자인국(지역경제과)’ 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관업무 구분>



○ 안 제10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제2항제3호 중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을 “행위허가,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 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 중 기술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도시환경국(재건축사업과)으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바람직한 개편으로 판단됨.

○ 안 부칙 중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의 규정은 2018.11.2. 조례 제144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시 반영하지 못한 일부 소관 국·과장의 업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1. 제안이유

전문지식이 풍부한 도시계획 및 재건축 관련 부서로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구분	현행	개 정 (안)
뉴디자인국	시장정비사업	[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도시환경국	-	[신설] 시장정비사업(재건축)에 관한 사항

(1) 시장정비(재건축)업무 이관 범위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만 지역경제과 추진

(2) 시장정비사업 주관부서 조정 : 지역경제과 ⇒ 재건축사업과

- 공동주택과 연계된 시장정비사업이 많고, 단독건물의 경우에도 주상복합형 건물로 재건축되므로 재건축사업과로 이관(단, 시장현대화사업은 이관 제외)

나. 소관 국·과장 변경 및 분장사항 일괄정비 및 업무분장에 따른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5. 31. ~ 2019. 06. 20.) : 의견 1건

-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주관 부서 이관 계획에 따른 부서별 업무 신설
관련 의견 : 일부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시장정비사업 및 대규모점포 관리”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관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를 “행위허가,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복지생활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뉴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뉴디자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 략)</p> <p>3. 경제정책개발과 도시경제와 상권 활성화, <u>시장정비사업 및 대규모점포 관리</u>, 기업지원 정책 및 육성, 농업지원과 관리, 통신·방문 판매업 등 관리, 대부업 등록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가축방역·유기동물보호·동물병원 관리 등 동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p> <p>4. ~ 6. (생 략)</p>	<p>제9조(뉴디자인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관리</u> ----- -----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 략)</p> <p>3.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p>	<p>제10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p>

설사업계획 승인·변경과 분
양 승인,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소규모 주택정비사
업,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
정과 공사장 관리, 아파트지
구 지구단위계획업무, 분양가
심사위원회·추정분담금검증
위원회·건축안전진단위원회
의 구성·운영,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 내 시설 안전점검,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
항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 행위
허가,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
계획, 사업시행인가)-----

4. ~ 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4. 작성자 : 총무과 오승훈(☎ 02-3423-5176)